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상수급인에 대한 대위권 행사 근거 마련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09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관련 대위권 행사(안 제7조제1항)	3
2.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절차 준용 등(안 제8조의2 신설 등)	7
3. 법인 출자자의 변제금 2차 납부의무(안 제8조의3 신설)	16
4. 체불사업주인 직상수급인, 변제금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 출자자 관련 자료 제공 및 관계전산망 이용 요청(안 제23조제1항제1호)	19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1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채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민사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던 것을 국제채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장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도 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직장수급인 포함)에 대해 국세채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채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1.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관련 대위권 행사(안 제7조제1항)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u>사업주를</u> 대신하여 지급한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 ----- ----- ----- ----- ----- ----- ----- <u>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u>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② ~ ⑧ (생략)	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2)·제8조의2에서 같다)를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근로기준법」은 ①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로서 하수급인³⁾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일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연대책임),⁴⁾⁵⁾

- 2)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3) 도급계약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 최초의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으로부터 수급을 받은 경우 하수급으로 볼 수 있음.
- 4)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②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그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음(건설업에서의 임금채권 연대책임).⁶⁾

한편,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면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⁷⁾ 사업주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직상수급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개정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가 사업주 및 직상수급인에게 가지는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지급금의 회수 실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수행하지 못한 경우

5) 단,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수급인으로, 직상수급인을 도급인으로 보고 있음.

6)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따를 경우 대지급금 지급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자 중에서 하도급인을 제외한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만 사실상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효과가 발생하여 하도급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고 이에 따라 직상수급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임.

2.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절차 준용 등(안 제8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금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또한, 대지급금의 회수에 관하여 '사업주'의 범위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직상수급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辨濟金)”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

현행	개정안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u>변제금</u>(<u>辨濟金</u>) 2. ~ 5. (생략) ② (생략)	<u>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연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u>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 ----- --. 1. <u>제8조의2제1항</u>----- <u>변제금</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므로,⁹⁾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으로써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하고 있음.

최근의 대지급금 환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당해 연도 대지급금 지급분 대비 회수분 비율은 최소 21.1%에서 최대 28.5%로 3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누적 회수율도 2023년 기준 30.9%로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대지급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불사업주의 재산 압류 등 보전절차를 조기에 신속 수행하기 곤란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9)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2019년 ~ 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 및 환수액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해연도 대지급금지급분(A)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당해연도 대지급금회수분(B)	114,216	122,483	148,248	153,240	148,132
당해연도 회수율(B/A)	24.8	21.1	27.1	28.5	21.6
누적 대지급금지급분(C)	4,574,052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누적 대지급금회수분(D)	1,567,381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누적 회수율(D/C)	34.3	32.8	32.2	31.9	30.9

*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 지급에 따라 얻게 되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①통지·독촉 등 국세체납처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에 관한 사항, ②법인의 합병·해산 등에 따른 납부의무 승계, ③공동사업 관계자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 부과, ④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전 징수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준용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준용되는 체납처분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내용
제25조	· 연체금의 징수 근거, 연체금 산정 기간, 부가연체금 등
제26조의2	· 징수우선순위(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등 순)
제27조	·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서면통지 및 독촉, 연대채무자에 대한 독촉효력 인정 등)
제27조의2	· 납부기한 전 징수 (국채·지방세 체납자, 강제집행을 받거나 법인 해산된 경우 등)
제28조	· 징수금의 체납처분 (징수금 독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근거
제28조의2	· 법인 합병에 의한 납부의무 승계
제28조의3	·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 승계
제28조의4	· 연대납부의무(공동사업 관계자, 법인 분할 시 연대납부의무)
제28조의5	·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민법」 준용(연대채무 관련 규정의 일부 준용)
제28조의7	· 국세기본법 준용(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담보제공 관련)
제29조	·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 사유
제32조	· 서류의 송달 관련 타 법 준용(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42조	· 시효 중단 - 제27조에 따른 통지, 독촉 -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교부청구(배당요구), 압류

일반 민사채권의 집행절차와 비교할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전처분을 위한 신청, 심리 및 결정 절차, 지급명령,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민사집행 절차와 국세채납처분 절차>

구 분	민사집행 절차	국세채납처분의 예
관 련 법 률	임금채권보장법, 민법, 민사 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임금채권보장법, 국세징수법, 보험료징수법(준용규정) 등
업 무 내 용	① 대지급금 지급	① 대지급금 지급
	② 변제금 납부고지 (15일)	② 변제금 납부고지 (30일) - 납입고지 - 독촉
	③ 재산조사	③ 채납처분 승인 (7일) - 재산조사
	④ 재산 보전처분(가압류 등) (5일)	④ 재산 보전처분(압류) (1일)
	- 가압류신청서 접수(전자접수) - 가압류 결정(법원) - 가압류 통지서 송부(채무자)	- 압류조서(촉탁서) 작성·송부 * 촉탁과 동시 압류효력 발생 - 압류 통지서 송부(채무자) * 법원에 대한 신청, 심리, 결정 등의 절차 없음
	⑤ 집행권원 확보 (120일)	
	- 제소전 화해 신청 - 지급명령 신청 - 소송수행(변론, 증거·증인 신청 등) - 사건 심리(법원) - 법원 판결 및 집행문 부여 등	*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절차 없음
	⑥ 강제환가 절차(강제집행) 이행 (150일)	⑤ 강제환가 절차(공매) 이행 (120일)
	- 강제집행 신청(법원) - 배당기일 참석(법원) - 배당금 수령 등	* (필요시) 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⑥ 변제금 수납	⑤ 변제금 수납
소 요 시 간	<290일> 강제집행이 유찰없이 진행될 경우 1회 유찰시마다 15일이상 추가 소요	<158일> 공매가 유찰없이 진행될 경우 1회 유찰시마다 10일이상 추가 소요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대지급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고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매년 축소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력상실·재산도피 전에 신속·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회수절차를 민사절차에서 국세채납처분 절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은 조기에 효율적인 대지급금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유자금 규모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계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관하여는 신속한 변제금 회수를 통한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통한 임금채불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여 행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함에도 공법상 특유한 채권의 회수절차인 국세채

납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에 대하여 채권회수에 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민사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의 양육비 긴급지원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¹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민사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국세채납절차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입법례를 확인할 수 있음.¹¹⁾

고용노동부는 ①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복잡하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회수 실적이 저조하고, 대지급금으로 체불을 청산한 후 변제금 납부 의무를 해태하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어¹²⁾ 임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⑧ (생략)

12) '24.8월말 기준 변제금 미회수 사업장 약 11.7만개소, 미회수액 약 3조7천억원(누적 기준)

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②민사채권 관계에서도 사안의 긴급성, 금전 지원의 공공성·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우선 변제한 후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유사 입법례¹³⁾가 있고, 대지급금 회수금으로 운영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등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지급금 회수에 관하여 개정안과 같이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법인 출자자의 변제금 2차 납부의무(안 제8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채납처분절차가 준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¹⁴⁾ 지연이자, 채납처분비가 충당되지 않는 경우 체불행위가 있을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되(안 제8조의3 본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주식 수 등에 따라 책임의 한도를 제한함(안 제8조의3 단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 지연이자 및 채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발생 당시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14) 안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辨濟金)”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u>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¹⁵⁾ 이는 국가의 특유한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원활한 수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인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있어 법인의 재산으로 전액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변제금 등을 납부할

15)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의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변제금 납부책임을 합법적으로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근로자가 법인에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볼 것인데, 그 채권에 대한 대위행사 절차에서 자연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를 법인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피대위권리인 임금채권의 권리자인 근로자에 비해서도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유한 책임을 지는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대지급금을 통해 손쉽게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법인 폐업 또는 해산으로 변제금 납부책임을 면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라 미회수채권 중 법인 사업주의 미회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¹⁶⁾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출자자)에게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임.

16) 24.8월말 기준 누적 미회수채권 총 3조 7,185억원 중 법인사업주의 미회수금액이 2조 6,799억원으로 72.1% 차지

4. 체불사업주인 직장수급인, 변제금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 출자자 관련 자료 제공 및 관계전산망 이용 요청(안 제23조제1항제1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 회수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장수급인이나 대지급금 변제금 또는 관련 체납처분비 등을 충당할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무한책임사원 등의 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요청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 ----- ----- ----- ----- ----- ----- ----- -----

현행	개정안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u>채불사업주, 부당이득자</u> 및 연대책임자(이하 “채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 2. ~ 12. (생략) ②·③ (생략)	----- ----- ----- ----. ----- ----- -----. 1. ----- <u>채불사업주</u>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장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8조의3에 따른 출자자,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자----- ----- ----- 2.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직상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근거가 마련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전제에서 임금채권의 집행 등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요청권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른 개정규정의 논의에 따라 부수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안 제7조제1항(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관련 대위권 행사) 및 제8조의3(법인 출자자의 변제금 2차 납부의무)이 개정 및 신설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실질적인 미지급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를 위해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직상수급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출자자 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파악이 필수적인 바, 개정안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요청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